

kiri Weekly

2016.8.1. 제395호

포커스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

이슈 분석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동 허용과 그 영향

글로벌 이슈

영국, 보험계약 예금보호한도 확대
브렉시트가 미국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

강성호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급속한 고령화 및 장수화 과정에서 노후소득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을 통한 소득대체율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함.
 - 20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도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30만 원(현 20만 원)으로 증액(더불어민주당)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그러나, 현행 공적연금은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해 있어 급여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선진국 개혁 사례와 같이 공적연금 보완형 혹은 공·사연계형 연금도입이 필요함.
 - 독일 등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은 축소하되 이를 보완할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공·사연계형 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 보장강화 차원에서 공·사 간 협력을 도모함.
 - 일본 또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독일의 리스터연금에 준하는 공·사연계형 연금(장수안심연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로 인해 공적연금의 급여수준(2028년 소득대체율 40%)이 약화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사연계연금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됨.
 - 공·사연계연금 도입은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로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재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공·사연계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는 준공적성격의 연금제도가 되도록 설계
 - 정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을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종신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연금과의 연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설계
 - 감시·감독은 정부에서, 관리·운영은 금융시장에서 수행하는 시장친화형으로 설계

1. 검토 배경



- 급속한 고령화 및 장수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보다 증가될 것으로 우려됨.
 -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2.5%)와 장수화(0세 기준 기대여명은 연 0.45세씩 증가)로 인해 노인빈곤율(2013년 49.6%)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 또한 소득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보다 증대될 우려마저 있음.
 - 2005~2011년 기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비율을 보면, 0.6%는 고소득층에서, 13.1%는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¹⁾
- 이에 따라 최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음.
 - 최근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을 통한 소득대체율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함.
 - 『2016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보험료를 조기 인상하고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40%까지 감소시키는 단계적 국민연금 급여감액 프로그램을 철회할 것을 권고함.
 - 또한, 20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30만 원(현 20만 원)으로 증액(더불어민주당)하자는 주장이 제기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감안하면,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재보다 증가시키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
 - 왜냐하면,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급여수준만 증가시키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문제를 후세대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공·사적 연금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공·사연계연금(가칭)²⁾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김미곤(2014),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2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기존 자료에서 발견되는 인증형 개인연금(예, 독일 리스트연금)이라는 용어는 사적연금이라는 의미로만 접근되어 실질적인 의미와 다소 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용어를 재정립하였음. 또한 공·사연계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되 사적연금 체계(수지상등 원칙)로 운영하는 공·사적 연금의 혼합형태로 기존의 사적연금과는 별개임.

- 이에 본고는 공·사 간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독일 등 외국의 공·사연계연금 운영사례 및 특징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설계(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³⁾
- 한편, 공·사연계연금 도입을 주장한 선행 연구들도 있으나⁴⁾,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적용가능한 공·사연계연금 설계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2. 공·사 연금 현황 및 문제



■ 국민연금 제도개선으로 급여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미흡한 실정임.

- 1988년 제도시행 당시 소득대체율⁵⁾은 70%였으나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28년부터 40%로 낮아짐.
- 이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16.3%⁶⁾수준이며, 제도가 성숙⁷⁾되더라도 25~3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⁸⁾

■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2060년 기금 소진이 예상됨.

-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 중심의 연금개혁을 단행하였으나⁹⁾ 여전히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됨.

■ 사적연금 또한 낮은 가입률 및 유지율 등으로 인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이 저조함.

- 전체 상용근로자의 퇴직연금가입률은 53.6%이며, 55세 이상 퇴직자의 연금수급률은 7.1%에 불과함.

3) 본고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사적연금은 개인연금을 의미함.

4) '김원섭·강성호(200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2집, 사회복지학회', '조재훈·양성문(2013), 「정부지원개인연금 도입 효과 분석」, 『보험학회지』, 제94집, 보험학회'는 노후보장효과 분석에, '김원섭(2016), 「독일 리스터연금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한국연금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는 리스터연금제도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제시에, '류건식·이상우(2011),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향」, 『KiRi Weekly』, 제161호, 보험연구원'은 리스터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본고와 같이 우리나라에 적용할 설계모형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제시되지 못함.

5) 일반적으로 40년 가입기준으로 하되, '은퇴 전 평균근로소득' 대비 '수급하게 될 연금소득'으로 산출됨.

6) 평균소득월액은 208만 원이고 평균연금액은 34만 원(국민연금통계연보 2015년 말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대체율임.

7) 일반적으로 제도 도입 40년 이후부터 성숙기라고 볼 수 있음.; 강성호(2015),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고령화리뷰』, 2014년 제4호, 보험연구원.

8) 이태열·강성호·김유미(2014),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9) 보험료는 9%로 그대로 둔 채 1998년에서 2007년 50%로(1998년 개혁), 2008년 50%, 2008년 이후 매년 0.5%p씩 감소하여 2028년 이후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2007년 개혁).

- 또한 연금저축 가입률은 14.1%¹⁰⁾(2014년), 10년 유지율은 52.4%(2012년)에 그침.
 - 개인연금¹¹⁾을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64.4%가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아 연금가입의 양극화 현상을 보임.

- 퇴직연금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이 매우 낮아 향후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소득격차의 증가가 우려됨.
- 연금저축의 경우도 저소득층(예: 2천만 원 이하)의 가입률이 0.8%에 불과해 연금소득 격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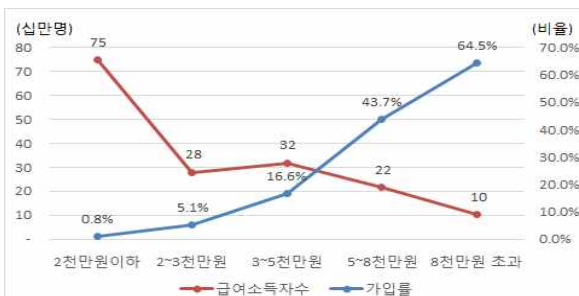
〈표 1〉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2015년)

(단위: 천 개소, %)

사업장 규모	도입 사업장	전체 사업장	도입 비율
10인 미만	186	1,487	12.5
10~29인	81	193	42.0
30~99인	29	58	49.6
100~299인	7.3	12	62.0
300~499인	1.1	1.6	71.6
500인 이상	1.3	1.3	99.3
합계	306	1,753	17.4

자료: 금융감독원, “2015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그림 1〉 연금저축 가입률



주: 가입률은 원천징수 실적 기준으로 급여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 비율로 산출함.

자료: 국세청(2015), 『국세통계연보』.

3. 해외의 공·사적 연금 연계 동향 및 특징



가. 연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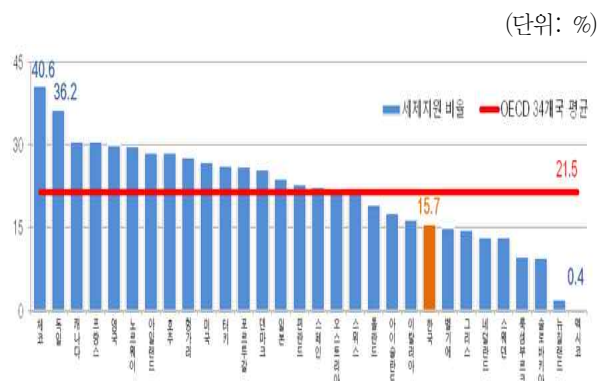
-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축소하되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0) 국세청(2015), 『2015년 국세통계연보』.

11)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세제적격)과 연금보험(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되며, ‘보험연구원(2016),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라도 가입하지 않은 개인연금 미가입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퇴직직전세대에 대한 추가적인 연금세제 혜택(미국: Catch-up Policy, 영국: 한시적 특례연금정책, 아일랜드: PRSA¹²) 제공으로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함.
- 또한 공적연금 소득보장 기능 축소과정에서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을 도입하여 공·사 간 소득보장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임.

〈그림 2〉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주: 1) 사적연금에 퇴직연금 포함.
2) 기여금액 대비 비율.

자료: OECD(2013), "Pension at a glance 2013".

〈그림 3〉 주요국의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



주: 1) 생산활동인구(16~64세) 대비 가입률.
2) 임의가입 사적연금만을 대상으로 함.
3) 독일·캐나다는 2008년, 그 외 국가는 2009년 기준.

자료: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2011".

〈표 2〉 주요국의 공적연금 보완형 사적연금

구분	독일(Riester)	오스트리아(PZV ¹⁾)	영국(NEST ²⁾)	프랑스(PERP ³⁾)
원금보증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수급방법	- 늦어도 85세까지 종신연금 · 30%까지 일시금 수령 가능	- 종신연금 또는 일시금 · 종신연금: 비과세 · 일시금: 보조금 반액 반환 및 과세	- 75% 종신연금 · 일시금 25%까지 비과세 * 2015년부터 연금의무화 규정 없어짐	- 종신연금 · 20%까지 일시금 수령 가능
가입형태	임의가입	임의가입	자동가입	임의가입
정부지원	- 보조금 또는 소득공제 · 유리한 쪽 적용	보조금	소득공제	소득공제
디폴트옵션	설정의무 없음	설정의무 없음	설정의무 있음	설정의무 없음

주: 1) PZV: Prämienbegünstigte Zusatzversicherung.

2) 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3) PERP: Plan d'épargne retraite populaire.

자료: 한국보험학회(2014), 『한·일 특별세미나』.

12) 2002년 연금법개정(the Pensions(Amendment) Act)으로 개인퇴직저축계좌(PRSA: Personal Retirement Savings Accounts)가 도입됨(<http://www.pensionsauthority.ie/en/Regulation/PRSAs/>).

■ 특히, 독일 등은 단순히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차원을 넘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적연금을 도입·운영함.

-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보조금을 통해 저소득층 가입을 강화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소득공제 방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고 있음.
 - 최근 일본은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유사한 ‘장수안심연금’¹³⁾을 도입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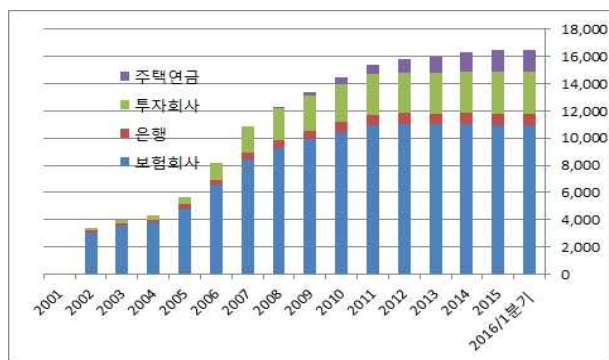
나. 도입 특징: 독일사례 중심¹⁴⁾

■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삭감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제고됨.

- 이는 제도 도입초기인 2002년 340만 건에서 2016년 1/4분기 1,648만 건으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음.
- 특히, 보조금 및 세제유인을 통해 저소득층 집단의 가입률이 42%(평균 35%) 수준으로 증대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4〉 독일 리스터연금의 계약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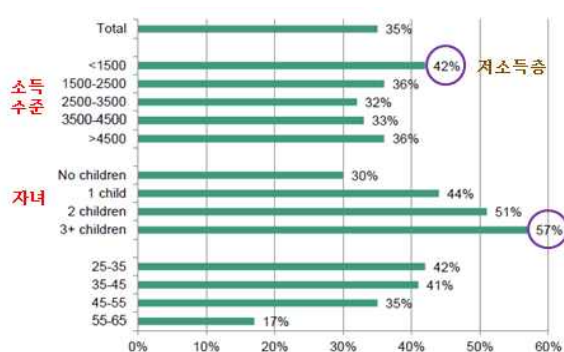
(단위: 천 건)



자료: 독일 노동사회청(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홈페이지(BMAS: <http://www.bmas.de/DE/Startseite/start.html>)를 참고하여 저자가 별도로 작성함.

〈그림 5〉 독일 리스터연금의 가입률

(단위: %)



자료: Brigitte Miksa(2013), “Prepared for Retirement? Exchange on Pension Trends and the German ‘Riester’ Model”, 한국연금학회 국제세미나.

13)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상우(2016), 「일본판 리스터연금(안) 제출배경과 주요내용」, 『KiRi Weekly』, 제382호, 보험연구원’을 참고.

14) 여기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리스터연금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이처럼 독일의 리스터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가입대상, 재정지원, 재분배기능, 상품인증 등에서 강한 가입유인이 있었기 때문임.
- 첫째, 리스터연금의 가입대상을 공적연금 당연가입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자영업자, 공적연금 임의가입자 등은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점임.
 - 부부 중 한 명만 리스터연금 대상자일 경우 그 배우자는 직업과 공적연금 의무가입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간접 수령할 수 있음.
 - 단, 부부 각자가 연금계약을 맺어야 하고 최소기여금 60유로를 납입하여야 함.

〈표 3〉 독일 리스터연금의 가입대상 및 내용

구분	보조금 수급 대상	보조금 수급 비 대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 직업훈련생, 직업군인 -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소득의 수령인 - 병역으로 입대한 사람과 병역대신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 - 공적연금가입이 의무화된 자영업자(공예가, 조산사, 배달원, 예술가) - 피고용인 같은 자영업자 -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간호직원 - 저소득 근로자(월수입 400~800유로) - 시간제 근로자(월수입 400유로 미만) - 실업보험 수급자, 요양 및 간병환자 - 장애, 취업불능 - 조기퇴직연금, 질병수당, 생계수당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 -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지역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와 자영업자 - 공무원연금 임의가입자 - 시간제 근로자(월수입 400유로 미만)이며, 사회보장체계 면제에 응한자 - 완전노령연금 수령자 - 사회부조금이나 복지혜택 수령자 - 학생

- 둘째, 리스터연금 가입 시 보조금 및 소득공제 형태로 지원하고 그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는 점임.
 - 보조금은 본인과 자녀에게 정액으로 제공(기본 154유로, 자녀 300유로)되며 최소기여율 4% 수준에서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2,100유로 수준임.
 - 특히, 정부보조금만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부담 최소기여금액(60유로)을 설정하고 있음.

〈표 4〉 보조금 및 소득공제(연간기준)

(단위: 유로, %)

구분	기본 보조금	자녀 보조금	최소 기여율	소득공제 한도
2002~2003	38	46	1.0	525
2004~2005	76	92	2.0	1,050
2006~2007	114	138	3.0	1,575
2008년 이후	154(200)	185(300)*	4.0	2,100

주: 1) 26세 이전 취업 시 200유로 취업보너스 지급.
 2) 기여율은 전년도 소득 대비 비율임.
 3) ()안은 25세 이하 신규가입자에게 1회에 한해 200유로 추가 지급.
 4) (*)안은 2008년 이후 출생.

자료: BMAS; Pension Reform in Europe(2005); Federal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SOCIAL SECURITY AT A GLANCE 2016을 참고해서 재정리.

〈표 5〉 최소기여금(연간기준)

(단위: 유로)

구분	자녀 없음	1자녀	2자녀 이상
2002~2004	45	38	30
2005년 이후	60		

자료: BMAS; Pension Reform in Europe(2005)를 참고해서 재정리.

■ 셋째,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소득재분배 및 출산 장려에 기여하도록 하였다는 점임.

- 연간소득 5,000유로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 가입자의 전체보험료 대비 지원금의 비중은 91.9% 수준임.
 - 반면, 연간 10만 유로 이상이면서 독신가구인 가입자는 전체보험료 대비 지원금 비중이 44.3% 수준임.

〈표 6〉 4인 가구(두 자녀 부부): 리스터연금

(단위: 유로, %)

전년도 표준소득	기본 보조금	자녀 수당	본인부담 보험료	전체납입 보험료	추가적 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5,000	308	370	60	738	-	91.9
15,000	308	370	60	738	-	91.9
25,000	308	370	322	1,000	-	67.8
40,000	308	370	922	1,600	-	42.4
50,000	308	370	1,322	2,000	-	33.9
75,000	308	370	1,422	2,100	-	32.3
100,000	308	370	1,422	2,100	14	33.0

자료: 류건식 · 이상우(2011).

〈표 7〉 1인 가구(무 자녀 독신): 리스터연금

(단위: 유로, %)

전년도 표준소득	기본 보조금	자녀 수당	본인부담 보험료	전체납입 보험료	추가적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5,000	154	-	60	214	-	72.0
15,000	154	-	446	600	-	25.7
25,000	154	-	846	1,000	141	29.5
40,000	154	-	1,446	1,600	432	36.6
50,000	154	-	1,846	2,000	672	41.3
75,000	154	-	1,946	2,100	777	44.3
100,000	154	-	1,946	2,100	777	44.3

■ 마지막으로, 정부 기준에 부합한 연금상품이 설계되었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면밀히 검사한 후 인 증하는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설정한다는 점임.

- 예를 들어, 60세 이전 급여지급이 금지되고, 원금은 보장되며, 종신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도록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리스터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노력함.

〈표 8〉 독일 리스터연금의 상품인증 기준

구분	인증기준 내용	기타
급여지급	- 60세 이전 급여지급 금지(2012년 이후 계약은 62세) - 연금급여에서 남녀차별 금지	재활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상품가능
원금보장	- 급여개시시점의 축적자금은 최소한 납입보험료 이상일 것	재활급여 등을 보장하는 상품 가입 시 보장금액 15%감소
연금지급	- 종신연금 또는 인출계획에 따라 확정분할지급을 받고 늦어도 85세부터 일정자금을 바탕으로 종신연금을 지급받음 - 축적된 자금의 30%까지 일시금 수령가능	1년치 지급가능
사업비규제	- 사업비는 최초 5년간 균등부과	계약기간 동안 정률 공제 시 제외
가입자권리	- 연금지급기간 전 일시정지, 해약, 이전할 수 있는 권리부여	-

- 이처럼 독일 등은 공·사 협력 및 사적연금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4. 공·사연계연금의 설계 방향



-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가중과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수준 미흡 등을 고려할 때 독일 등에서 도입한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인 공·사연계연금의 도입이 요구됨.
 - 그럼에도 공·사연계연금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재원확보문제 등)을 감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먼저 공·사연계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는 준공적 성격의 연금제도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적연금 미가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 사적연금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표 9〉 공·사연계연금의 적용(도입)방향(안)

구분	적용방향(안)	비고	
가입대상	- 공적연금 가입자(임의가입자 포함)	- 미가입자 제외 - 기존 연금저축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운영	
보험료	- 기준소득(국민연금기준)의 최소 4% -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 최소 본인부담금 연간 10만 원	
보조금	- 기본: 연간 10만 원 - 자녀(18세 미만): 1인당 연간 15만 원	- 소득공제한도 연간 150만 원 * 재원은 국고에서 충당	
급여	-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종신연금을 원칙으로 설정	- 수급조건 미충족 시 일시금 * 중도 해지 시 해지페널티 적용	
운영 기준	판매기관	보험회사, 은행, 증권 및 자산운용기관, 우체국	-
	인증검사	적격상품 인증은 금융감독원 수행	-
	중도인출	적립액의 일정비율	-
	특약유무	유족, 장애보장 특약 가입의무화	-
	최소급여	원리금보장	-
	사업비	사업비 상한 설정	신계약비, 유지비, 관리비
	해지페널티	해지 시 보조금 전액 회수	본인기여분, 수익분: 기타소득세

주: 보험료 및 보조금의 수치는 적용(도입) 시 고려할 수 있는 예시임.

■ 또한 정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제도도입 초기에는 중산층 이하 계층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되, 점진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즉,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단기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저소득계층) 중심으로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보험료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의 4%(최소 본인부담금은 연간 10만 원)로 하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국민연금과 동일)으로 함.
 - 보조금은 가입자에 대해 기본 연간 10만 원을, 자녀(18세 미만)에 대해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함.

■ 이와 더불어 종신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연금과의 연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종신연금으로 지급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제도에 대한 감시·감독은 정부에서, 관리·운영은 금융시장에서 수행하는 시장친화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즉, 인증검사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되, 원리금 보장형 운용, 중도인출 엄격규제, 사업비 상한 설정, 해지 시 보조금 전액 회수 등의 기준하에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kiri